바. 의약품 가격 표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29호가목)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적지 아니한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spspzz3841@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4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신세계건설㈜(윤명규) ②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김성철) ③ ㈜까뮤이앤씨(손병재) ④ 우림콘크리트공업㈜(문재경)

나. 전화번호 : ① 02-3406-6648 ② 02-880-7055 ③ 02-769-6262 ④ 02-428-0267

2. 명칭 : 강관 매입형 중공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HPC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PC(Precast Concrete)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한 각형강관의 외부에 스터드 전단연결재를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가 일체로 합성되도록 공장제작하고, 현장에서 각형강관의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둥의 중량 및 각형강관의 두께를 최소화할 수 있어 합성기둥의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면서 현장에서 별도의 거푸집, 기둥철근배근과 내화피복이 불필요하고 보의 구조재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접합부 시공이 가능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이다.

<범위>

각형강관의 외부에 철근콘크리트가 일체로 합성되도록 공장제작하고, 현장에서 각형강관의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강관 매입형 중공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림청공고제2017-302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5일

산 림 청 장

□ 신청인 : ㈜엠에스티통상

성 명	㈜엠에스티통상 (대표 이 미 영)
사업자등록번호	124-86-*****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5번길 45, 4마 103(성곡동)
기 술 명	안전성이 보강된 조립형 목재난간
기술 내용 (요약)	○ 내부에 금속 구조물을 삽입하여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외부는 천연 치장목재 마감, 조립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개발된 각각의 연결 부속물과 천연목재가 조화되어 안전성을 강화한 목재 마감형 안전난간재 - 지주의 기초구조 : 지면에 견고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플레이트를 구비, 다수의 철근이 지중에 매설되도록 함으로써 시공이 용이하고,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효과 - 지주 속의 연결구조 : 각관을 볼트결합을 통해 고정 후 용접을 통해 추가 고정하여 결합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 - 지주(기둥)와 가로재(횡대)의 연결 구조 : 평지, 경사지에 적용 가능하며 연결장치에 의해 기둥에 결합되는 난간의 각도를 조절 하는 효과, 난간이 설치되는 기둥의 관통 홀에 여유 공간을 형성하여 목재 자체의 팽창을 고려한 시공 가능 ○ 조립가능한 반제품 상태로 출고하여 현장 작업을 최소화
기술 범위	천연목재 디자인형 난간 제품을 이루는 지주의 기초석, 지주(속)의 연결구조, 삽입형 난간 가로재의 연결장치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형 울타리 제작과 그 시공에 관련 기술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